

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 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|
| 의안 번호 | 828 |
|----------|-----|

제출연월일 : 1999.

제출자 : 안산시장

제안이유

-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자금 및 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'89.10. 6. 공포.시행된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가 현재까지 건설행정수행에 불필요하게 되어 자치법규정비차원에서 폐지하고자 함.

주요골자

“동조례 폐지”

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 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폐지조례안

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-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6편 건설교통 제1장 건설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용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

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용자에 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

{ 안산시조례 제285호 }
1989. 10. 6

개정 1994. 1. 5 조례 제526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(이하 "융자금"이라 한다)을 용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(이하 "보조금"이라 한다)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대상) ①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 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급 받은 자로 한다.
②동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내에서 하여야 한다.

제3조(융자 추천 신청) ①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융자 추천 신청서 (별지 제1호서식)
 2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
- ②융자의 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.

제4조(심사위원회) 제3조의 신청에 의한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자의 적정여부 심사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다.(개정 '94.1.5.)

제5조(통보 및 보고) ①시장은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자체없이 시가 지정한 은행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

- ②동장은 제1항의 결과를 시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융자추천 한도액) ①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 한도액을 500만원 이내로 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.

제6편 건설교통 제1장 건설 안산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용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

②동장이 중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7조(보조기간) 용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.

제8조(보조금의 지급방법) ①보조금은 저리우대 자금 용자금리와 일반 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년 6%의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.

②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용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.

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.

제9조(용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) 용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용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 할 수 있다.

1. 용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
2. 용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
3.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

제10조(준용규정) 본 규정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보조금관리조례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'94. 1. 5>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